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852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2월 14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“바우처” 용어에 대한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추어 순화 표기하기 위하여 “바우처” 용어를 “이용권”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바우처”를 “이용권”으로 수정함(안 제11조제2항, 제13조제3항).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2항과 제13조제3항 중 “바우처”를 “이용권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1조(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·경제·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1조(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하 며, 청년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<u>바우처</u>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1조(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하 며, 청년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<u>이용권</u>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</u></p>	<p>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</u></p>

련한 보증보험 비용
등을 지원할 수 있으
며, 청년 스스로 자립
할 수 있도록 독립가
구를 형성하기 위하
여 이사에 소요되는
비용을 바우처 등으
로 지급할 수 있다.

련한 보증보험 비용
등을 지원할 수 있으
며, 청년 스스로 자립
할 수 있도록 독립가
구를 형성하기 위하
여 이사에 소요되는
비용을 이용권 등으
로 지급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 신·구 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·경제·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<u>한다</u>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1조(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며, 청년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③ 시장은 제1항, <u>제2항</u>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</p>	<p>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----- <u>제2항 및 제3항</u>-----</p>

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
한다.

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

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
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
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
야 하고,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
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
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 ①·②

(생략)

<신설>

-----.

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

① -----

----- 하며, 예산의
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 ①·②

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
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
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
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